●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-113호

「유아교육법」제32조 및 동법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(폐쇄명령) 청문실시 통지를 교부(우편)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(건물철거), 폐문·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07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

사립유치원 행정처분(폐쇄명령)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

- 1. 공고사유: 사립유치원 행정처분(폐쇄명령) 청문실시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: 2024. 6. 7.~2024. 6. 21.(15일)
- 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.
- 3. 근거법령: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,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- 4. 청문실시 통지 내용
 - 가. 예정된 처분의 제목: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(폐쇄명령) 나. 당사자

유치원명	성명[명칭]		주소
준성자연유치원	유치원 설립·경영자 ㈜준성종합개발(대표이사 이〇〇)	유치원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
		설립ㆍ경영자(법인)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00
		법인 대표이사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00

- 다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1) 설립자 부존재
 - 2)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
 - 3)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
- 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준성자연유치원 폐쇄명령
- 마. 법적근거: 「유아교육법」제7조(유치원의 구분)제3호,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제5조(체육장)제2항, 제6조(교지), 제7조(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)제1항, 「유아교육법」제32조(유치원의 폐쇄 등) 제1항

바. 청문실시

- 1) 기관 및 부서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
- 2) 주 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,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- 3) 전화번호: 031-900-2934
- 4) 일 시: 2024. 7. 3.(수) 10시부터 12시까지(2시간)
- 5) 장 소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지하1층 회의실
- 6) 주 재 자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장 정00

사. 유의사항

- 1)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)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3)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4)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	
	주소	전화번호		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		
	당사자	성명(명칭)		
		주소		
		(전화번호:		
		(단위단호: /		
	의 견			
	기 타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